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65

발의연월일: 2020. 11. 18.

발 의 자:윤후덕·고용진·권인숙

김정호・박 정・서삼석

송갑석 · 양정숙 · 양향자

오영환 · 우원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률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	
억원(<u>제1호</u> 에 해당하는 자에게	<u>제1호 또는 제2호</u>
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	
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	
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	
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	
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